사 업 명
(1)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35,302	38,169	38,485	38,485	316	0.8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177호)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9,153	9,443	9,546	9,546	103	1.1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수혜자 : 국무총리비서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3)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7001-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120	11,610	12,243	12,243	633	5.5

4.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177호)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778	2,955	2,950	2,950	△5	△0.2

4. 사업목적·내용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1,037	1,155	1,170	1,170	15	1.3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실무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총리비서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89	715	715	715	-	-

4.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원 행정실무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7)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5,719	6,365	6,540	6,525	160	2.5

4. 사업목적·내용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770호)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8)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1,221	1,395	1,440	1,435	40	2.9

4. 사업목적·내용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총리비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30617호)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수혜자 : 국무총리비서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1,342	1,440	1,440	98	7.3

4.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미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과제관리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0	177	230	197	20	11.3%

4. 사업목적·내용

○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제18조)

○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윤석열정부 국정과제안」발표 ('22.5.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관리계획」확정('22.7.26, 국무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기	주요 내용
정기 점검	매월, 분기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등 점검
	반기	■ 주요 추진실적·국민 체감 성과 확인
	매년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수시 점검	-	■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 집중 점검,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사 업 명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과제관리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1,384	1,346	1,346	1,346	-	-

4. 사업목적·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발전하는 IT 기술과 표준을 적용하며 응용SW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특히 '25년은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도입 등으로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My Page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이성을 대폭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 추진경위

- ‘06년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07년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나라시스템 연계
- ‘07년 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년 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7~’08년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9년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12년 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3~’14년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1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18년 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20년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및 차세대 EDMS 개발
- ‘21~’22년 액티브X 대체 응용S/W 개선 완료 및 새정부 국정운영체계 반영
- ‘23~’24년 노후장비 AP이관 및 핵심업무 자동화 등 지능화 기능 도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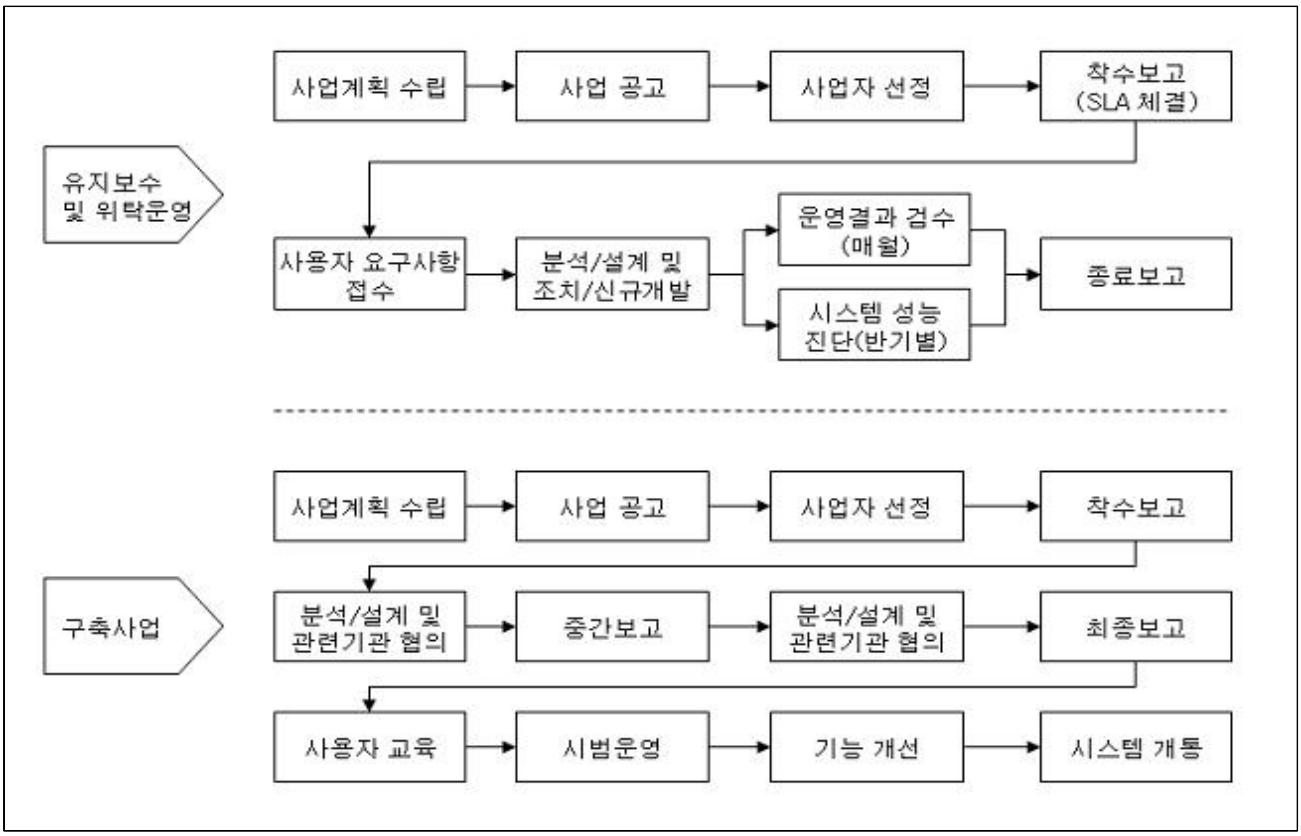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SLA 체결)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분석/설계 및
조치/신규개발
운영결과 검수
(매월)
시스템 성능
진단(반기별)
종료보고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중간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최종보고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기능 개선
시스템 개통

사 업 명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378	2,724	2,845	2,845	121	4.4

4. 사업목적·내용

○ (정평위 운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평가포상금)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 수행
-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 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
-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총리 소속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 국정과제・일자리창출・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일자리 창출과 국정과제 부문 통합, 정부혁신 신설 등 특정평가체계 개편('18.4월)
- 정부업무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21.4월)
- 정부업무평가 대상 과제를 국정과제에서 기관별 주요정책과제로 개편('22.3월)
- 협업 부문 신설 → 협업과제, 주요정책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 체계 개편('24.4월)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20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시행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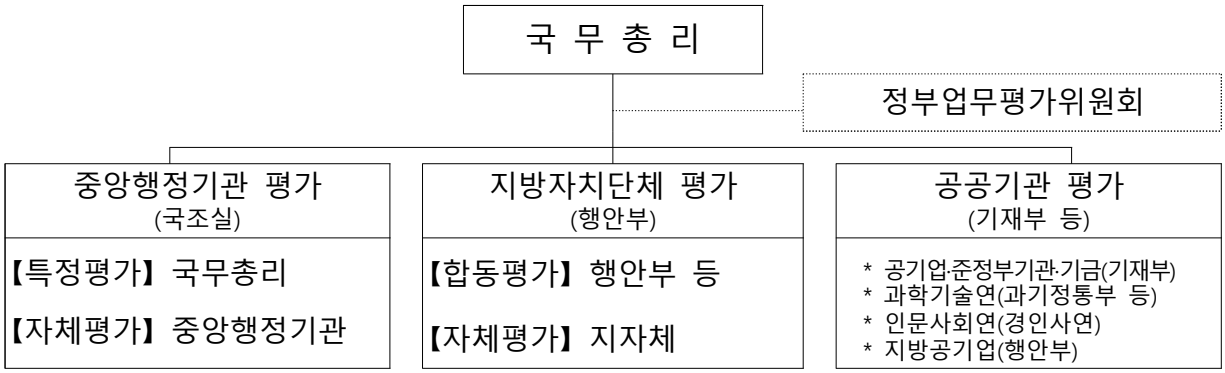

□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실시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합동평가
- 지자체 장이 고유사무 전반을 자체평가

○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기업, 출연연 등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사 업 명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7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과제관리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528	1,242	1,242	1,242	-	-

4. 사업목적·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원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고도화) 발전하는 IT 기술과 표준을 적용하며 응용SW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 특히 '25년은 성과지표, 개발평가 관련 기능 고도화 2차년도로 지표 개발 단계별 안내시스템 구현 및 개별평가 기능추가·활용증대를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추진경위

- ’03년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 e-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05.6～10)
- ’06～‘09년 e-IPSES 2~5차 정보화사업
- ’10년 e-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13년 e-IPSES 2단계 1~3차 고도화사업
- ’14~‘15년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국정과제기반의 시스템 개편
- ’16~‘17년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액티브X 제거 등 시스템 고도화
- ’18~‘20년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및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 ‘21~’22년 정부업무평가포털 구축 완료 및 평가분석시스템 구축
- ‘23년 시스템 G-클라우드 기반 전환, 성과지표·개별평가 기능 고도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공무원, 민간 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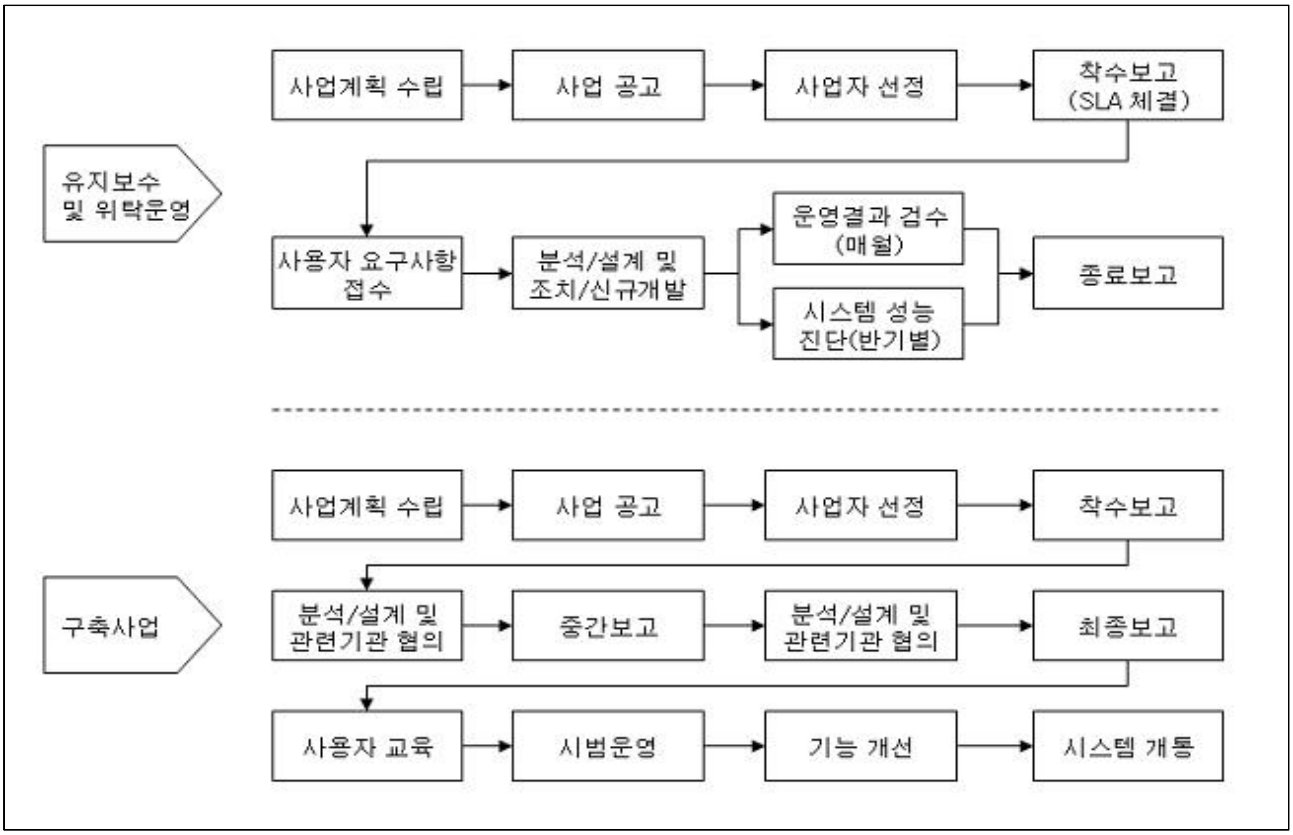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SLA 체결)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분석/설계 및
조치/신규개발
운영결과 검수
(매월)
시스템 성능
진단(반기별)
종료보고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중간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최종보고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기능 개선
시스템 개통

사 업 명
(14)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70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본예산(B)		(B-A)/A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	-	199	139	139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총리실 주도로 경제·사회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하여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범부처 대책 마련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운영

○ 민생현안 논의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민생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및 정책 효과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조·제5조 등

○ 추진경위

- '03.6월, 총리 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신설
- '23.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신규('25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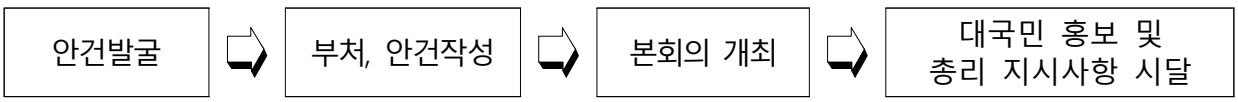

사 업 명
(15)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공공기관 갈등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공공기관 갈등관리	377	350	350	350	-	-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조정실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07년~)에 근거하여, △갈등관리 운영지원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갈등관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

- (갈등관리 운영지원) △갈등관리정책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운영 △갈등과제 선정·관리 △정부업무평가(갈등관리 부문) 실시 △현장점검 등 범부처 차원의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 갈등 규정(제24조)에 따라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갈등현안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의 민간사업 보조

- (갈등관리 연구) 공공기관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제20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제24조, 제26조

○ 추진경위

- 대통령, 지속발전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월)
- 대통령, 공공갈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 지시('06.9월)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 연구기관 최초 지정(한국행정연구원, '07.9.5~'19.12.31)
- 갈등관리 연구기관 추가 지정(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1.12.31)
- 갈등관리 연구기관 추가 지정(방통대·한양대, '20.1.1~'22.12.31)
- 갈등관리 연구기관 추가 지정(한국갈등해결센터·전북대, '23.1.1~'25.12.3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 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기관 갈등관리	민간 경상 보조	단국대	70백만원	5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한국갈등해결센터	70백만원	50	
		전북대	35백만원	50	
		한양대	35백만원	5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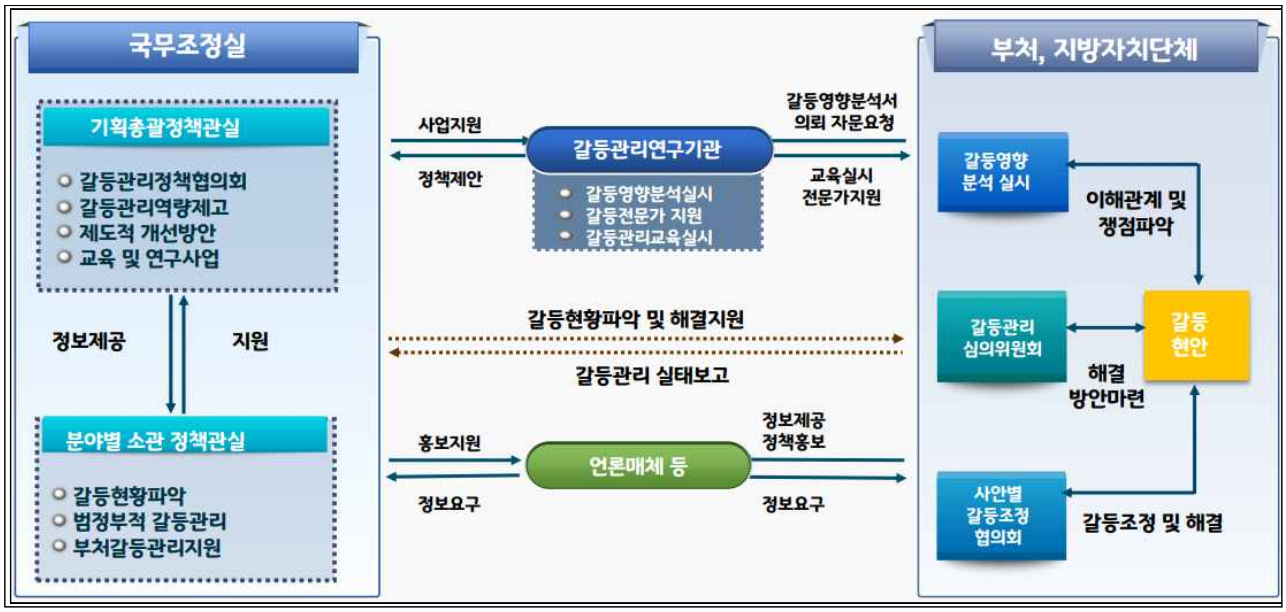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관리역량제고
제도적 개선방안
교육 및 연구사업
정보제공
지원
분야별 소관 정책관실
갈등현황파악
범정부적 갈등관리
부처갈등관리지원
사업지원
정책제안
갈등관리연구기관
갈등영향분석실시
갈등전문가 지원
갈등관리교육실시
갈등영향분석서 의뢰 자문요청
교육실시 전문가지원
갈등현황파악 및 해결지원
갈등관리 실태보고
홍보지원
정보요구
언론매체 등
정보제공 정책홍보
정보요구
부처, 지방자치단체
갈등영향 분석 실시
이해관계 및 쟁점파악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갈등 현안
해결 방안마련
사안별 갈등조정 협의회
갈등조정 및 해결

사 업 명
(16) 대테러센터 운영 (7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센터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대테러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대테러센터 운영	832	674	710	710	36	5.3

4. 사업목적·내용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건 대응, 테러대상 시설·이용수단 관리, 교육·홍보·실전 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테러 대비태세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대테러센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절차>

배정	⇨	예산신청	⇨	예산집행	⇨	집행결과통보
분기별 예산배정		각 사업별 예산신청		각 사업별 예산집행		집행결과 총무과 통보
국조실 총무과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		**기획총괄부 국조실 총무과**		**기획총괄부**

사 업 명
(17) 인권보호관 지원 (7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인권보호관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인권보호관 지원	263	386	410	410	24	6.2

4. 사업목적·내용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비상임)'의 활동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16.6.1 제정, '16.6.4 시행)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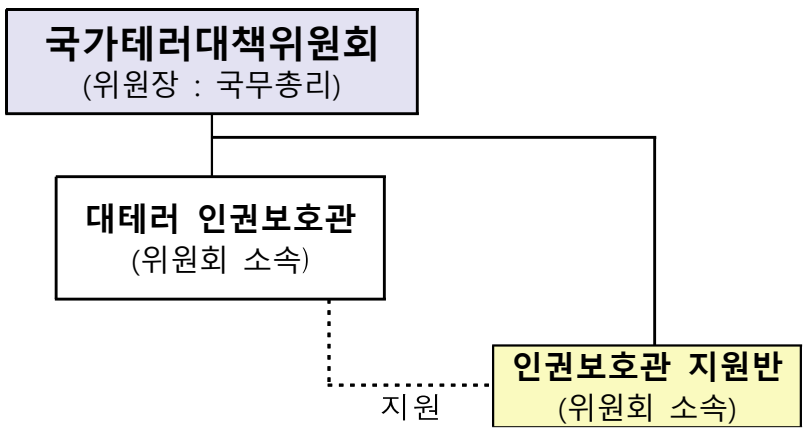

- **(자문·개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안건 검토,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민원처리)**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리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
- **(교육·홍보)** 대테러기관의 업무추진시 불법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 및 관련제도 연구 개선

사 업 명
(18)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	484	88	537	537	449	510

4.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 추진경위

-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관리를 위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17.12~'18.5월, 국회 미세먼지특위)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및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 발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8.14 공표, '19.2.15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조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2.15) 출범 (존속기한 5년, ~'24.2.1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본회의 '23.12.28)되어, 위원회 및 기획단 존속기한 2년 연장(존속기한 7년, ~'26.2.1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15~'26.2.14 (7년 한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사 업 명
(1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총괄정책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정부안	2025년 본예산(B)	증감 (B-A)	증감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313	1,759	2,120	1,989	230	13.1

4. 사업목적·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규제혁신전략회의) 동 내역사업은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국제협력) 동 내역사업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 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것임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동 내역사업은 규제혁신 성과 홍보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추진경위

-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 198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심사(중앙행정기관)>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 실시(법 제7조 제3항)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법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o 위원회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인지를 결정(법 제11조)

o 위원회는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법 제12조)

o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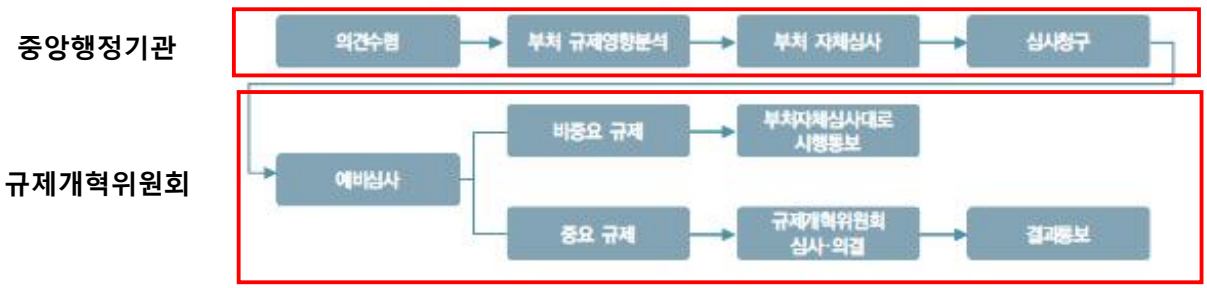

■ **규제혁신전략회의**

o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사회단체 등 분야별 협회·단체, 정책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민·관 공동 참여

o (기능·운영) 주요 규제혁신 방안 논의,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규제조정실에서 사무기구 역할, 과제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전 과정 총괄·관리

■ **규제심판제도**

o (추진체계) 학자,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규제심판부 구성(99명, Pool제 운영)

o (추진방식) 과제별 전문가를 규제심판 위원으로 배정(5인 이내)하고, 이해관계자·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의 적정성 심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제 접수·발굴	**소관부처 검토**	**규제심판부**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규제혁신 전략회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과제 접수·발굴 ➡	건의 수용 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	규제심판부(5인 내외) 구성 및 개선 권고 결정 * 필요시 대국민 온라인 토론 실시 ➡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권고안 의결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불수용 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 **규제샌드박스**

o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 :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법령 개정 착수
• **신속확인** :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및 시장출시 가능

사 업 명
(20)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규제개혁 정보화 (정보화)	784	2,237	2,528	2,528	291	13

4. 사업목적·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법령 제·개정시 실시하고 있는 규제심사를 지원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관리하는 등 규제행정 업무를 위한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규제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규제정보포털 구축·운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 추진경위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08.4.4)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8.7～‘08.11)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 (‘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16.7~’16.10)
-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사업 (‘20.5～‘20.12)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24.4～‘24.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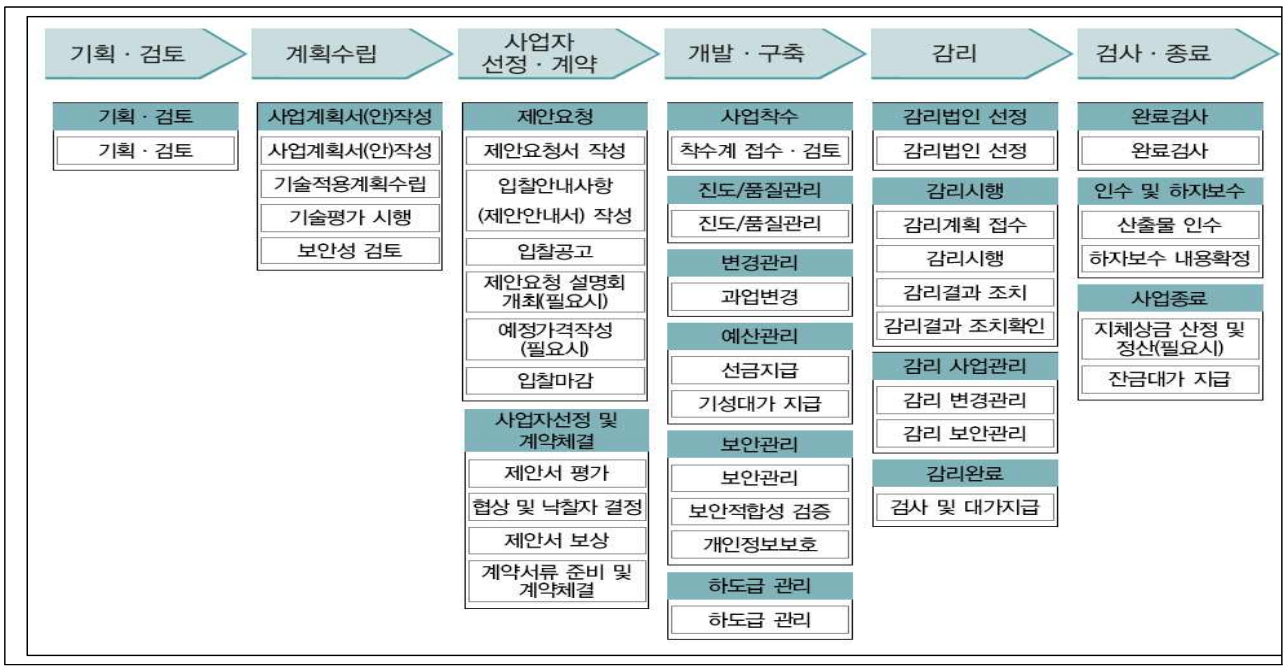

사 업 명
(21)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703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4,960	5,154	4,443	3,795	△1,359	△26.4

4. 사업목적·내용

○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 등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9호, '22.7.20.)

○ 추진경위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덩어리 규제가 지목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덩어리 규제는 多 부처·多 법령과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 존재
- 집중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연구기관·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신설('22.8.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2년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덩어리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외부 건의, 자체 분석 등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
② 발굴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자체 개선방안 마련 또는 연구용역 활용)
※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규제혁신 자문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
③ 필요시 부처의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 업 명
(22)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7035-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운영	121	105	96	96	△9	△8.6

4. 사업목적·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 사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활성화 지원 및 갈등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08.9)

○ 추진경위

- 청와대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기지이전T/F 설치·운영 결정('08. 4)
-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08. 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협의체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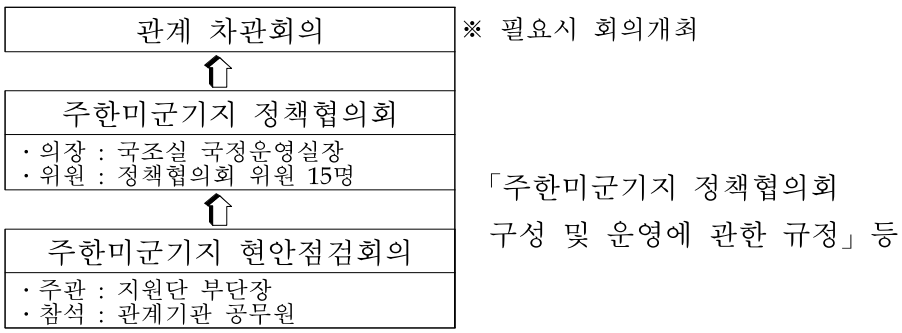

사 업 명
(23)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70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제개발협력본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741	2,972	5,396	5,396	2,424	81.6

4. 사업목적·내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홍보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11.27 전부개정안 시행)

・ODA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구성(법 §7①·⑤)

・위원회 업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법 §9①)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법 §16)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1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운영(법 §18)

・ODA 관련 전문인력 양성(법§19)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법 §20)

・ODA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법 §21①)

○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298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 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평가소위원회(現 평가전문위원회, '20.11~)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09.11)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0.7.26)
- 제1차('10.12) 및 제2차('15.1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8.6.2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21.2.25)

※ 주요 개정내용 : 전략 수립, 사업 연계·조정 및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委 기능 강화, 사무기구 설치 근거 신설 등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21.1)
-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수립(24.6.2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부처, 민간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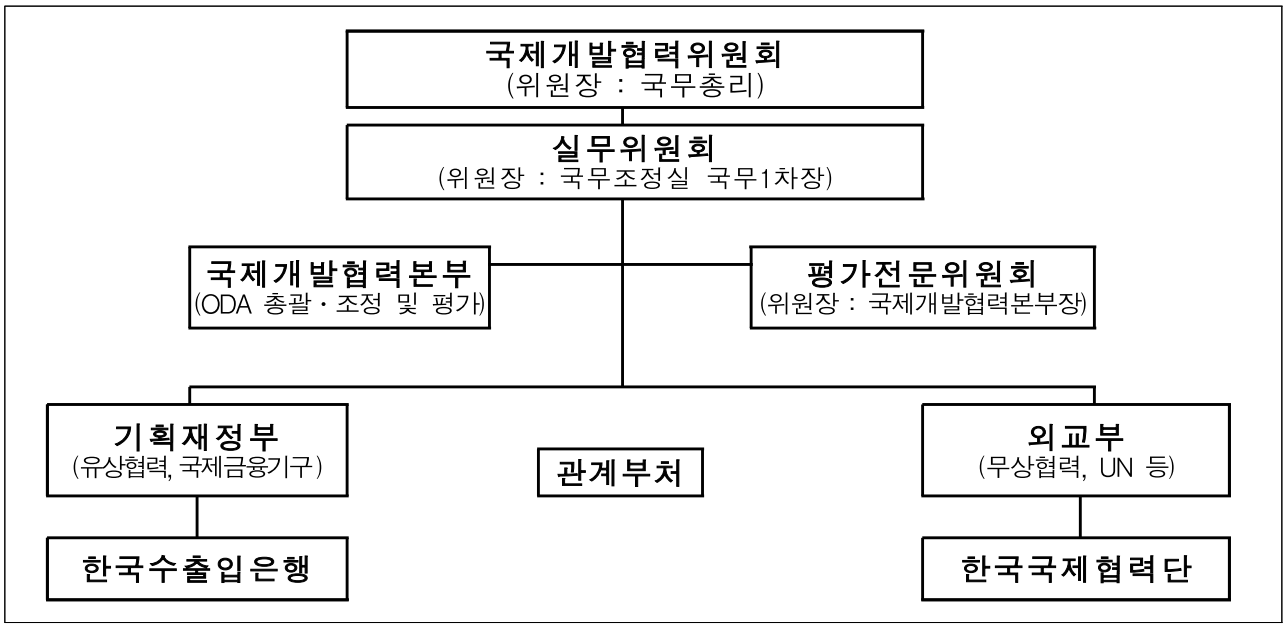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총괄·조정 및 평가)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기획재정부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관계부처
외교부
(무상협력, UN 등)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사 업 명
(24)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7035-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경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세월호피해지원단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정부안	2025년 본예산(B)	증감 (B-A)	(B-A)/A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1	108	107	107	△1	△0.9

4. 사업목적·내용

○ ’15.3월 제정・시행된「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비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 추진경위

- '15.1.2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정('15.3.29 시행)
- '15. 3,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지원조직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발족
- ~현재, 18개 피해지원 대책*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지원 중

* 세월호피해지원법상 18개 대책 중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등 9개 대책 완료, 피해지역(안산, 진도) 경제활성화,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9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4.16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피해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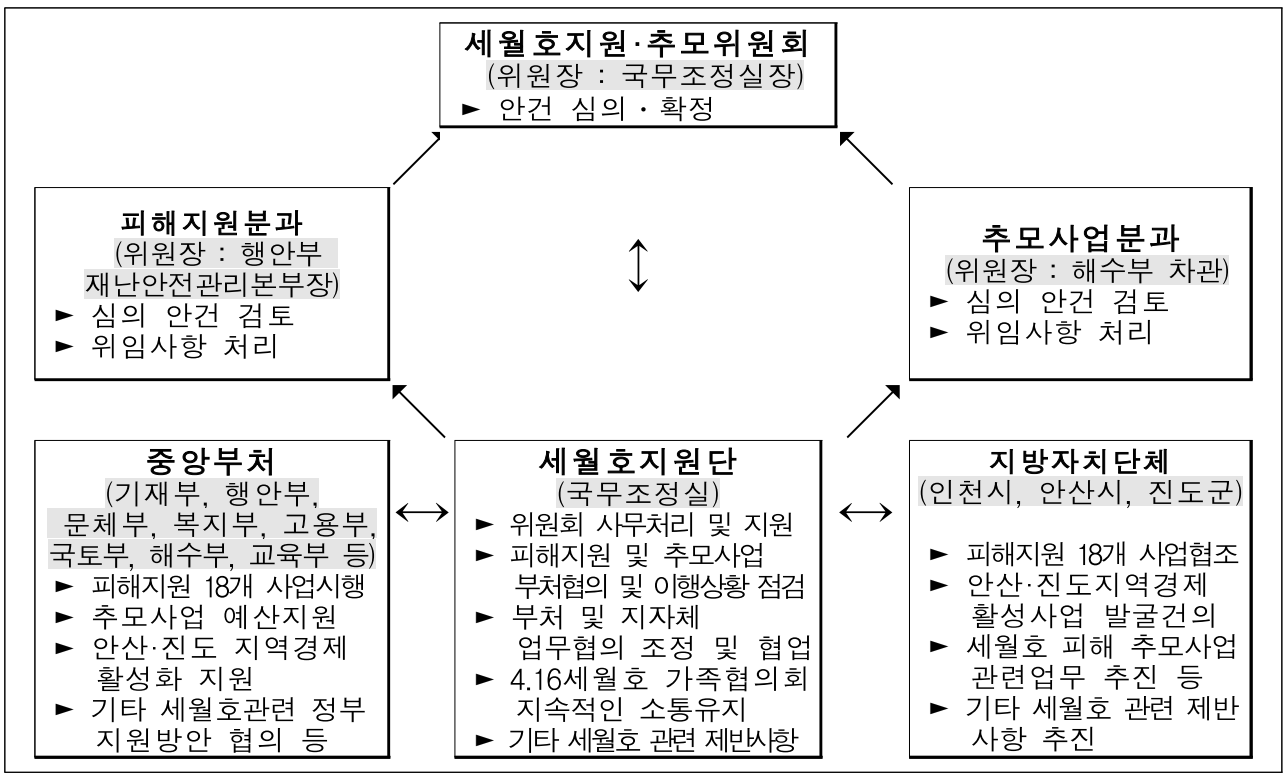

사 업 명
(25)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61	159	144	144	△15	△9.4

4. 사업목적·내용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 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 추진경위

-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 8. 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6. 2. 12.)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62호, '16. 2. 11. 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16. 2. 12.)
-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관련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31)
- 120대 국정과제(약속08-국정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이행지원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 국무총리 지시('23.8월)에 따라 '새만금 빅피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 등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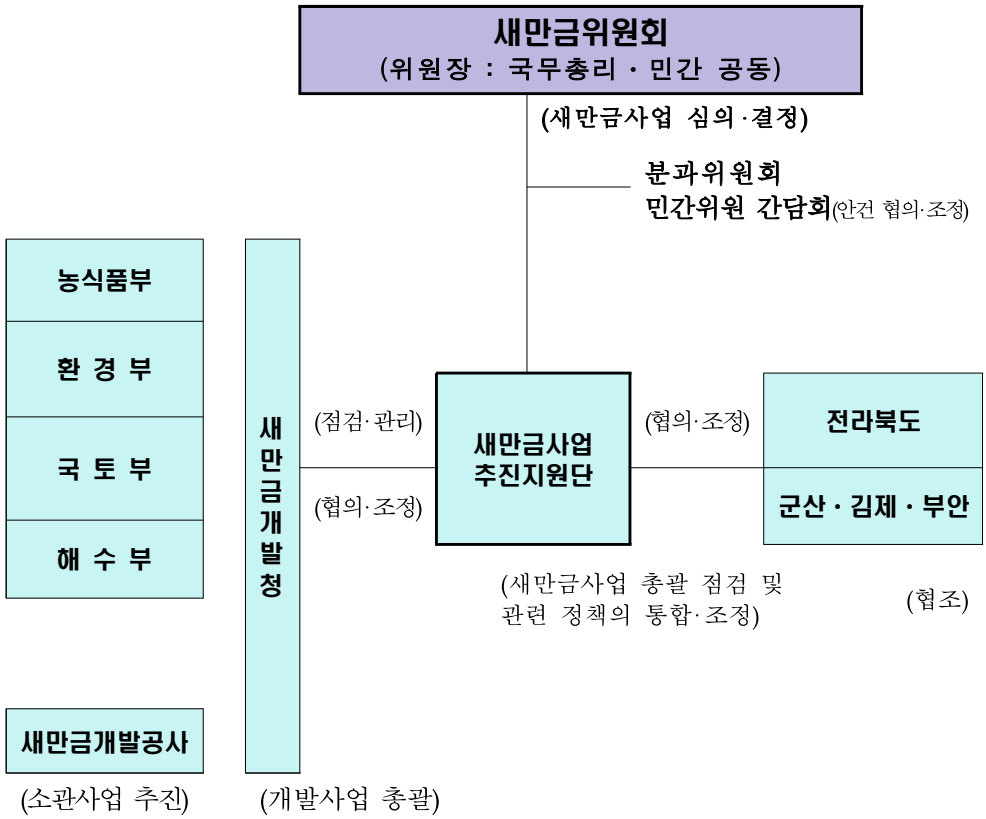

○ **새만금위원회* 운영** :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2개 분과) :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수질·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
- 민간위원 간담회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행령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분과위원회)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발굴, 상정 및 후속조치 등)
- 새만금사업 관련 국무총리 정책 보좌 및 지시사항 관리
-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 협의·조정
- 농업·비농업 부문, 개발·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 조정
-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중앙↔지자체↔주민)
-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시행령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62호)

사 업 명
(2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7035-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2,966	3,410	3,460	3,460	50	1.5

4. 사업목적·내용

○ OECD 선진국의 제도·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등에게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도국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추진경위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 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9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년4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7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9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명칭 변경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ODA)	출연 (국제부담금)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3,410 (3,460)	100.0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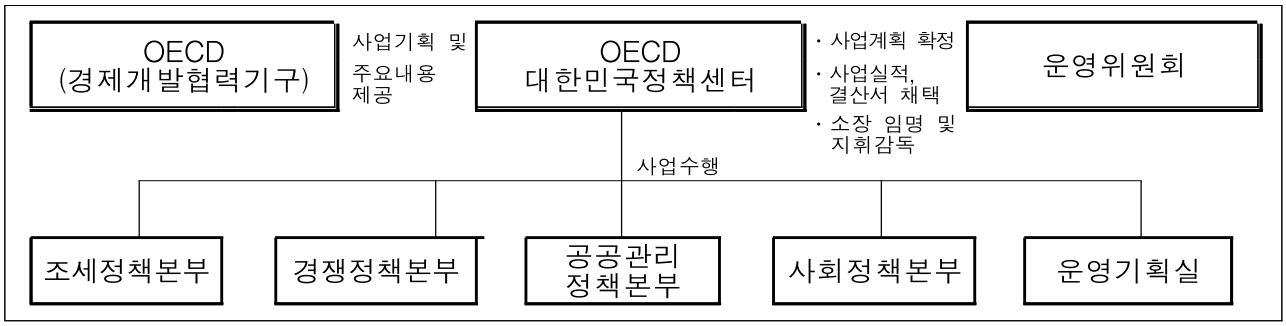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사업기획 및
주요내용
제공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 사업계획 확정
· 사업실적,
결산서 채택
· 소장 임명 및
지휘감독
운영위원회
사업수행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
정책본부
사회정책본부
운영기획실

사 업 명
(2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5-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323	8,984	7,034	7,034	△1,950	△21.7

4. 사업목적·내용

○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청년정책조정실장)

○ 추진경위

- 청년들의 높은 실업, 힘든 주거여건,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청년기본법(안)**」 발의('18.5.21)

  * 여·야 의원 18인 참여, 위원장 이명수(한) 및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설치 등

- 국조실을 청년정책 주관부처로 하는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정('19.5.2)

- 청년기본법 제정前 범정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국조실內 추진단 설치 추진 → 청년정책 TF 설치('19.6.3)

- 국조실 직제 개정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출범('19.7.30)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공포('20.2.4) → 시행('20.8.5)

  * 법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의 사무국 역할 수행

-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21.6.15)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인재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근거 마련('22.2.18 시행)

-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 등 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정과제(92) 추진

  *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12) 및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24.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750	50%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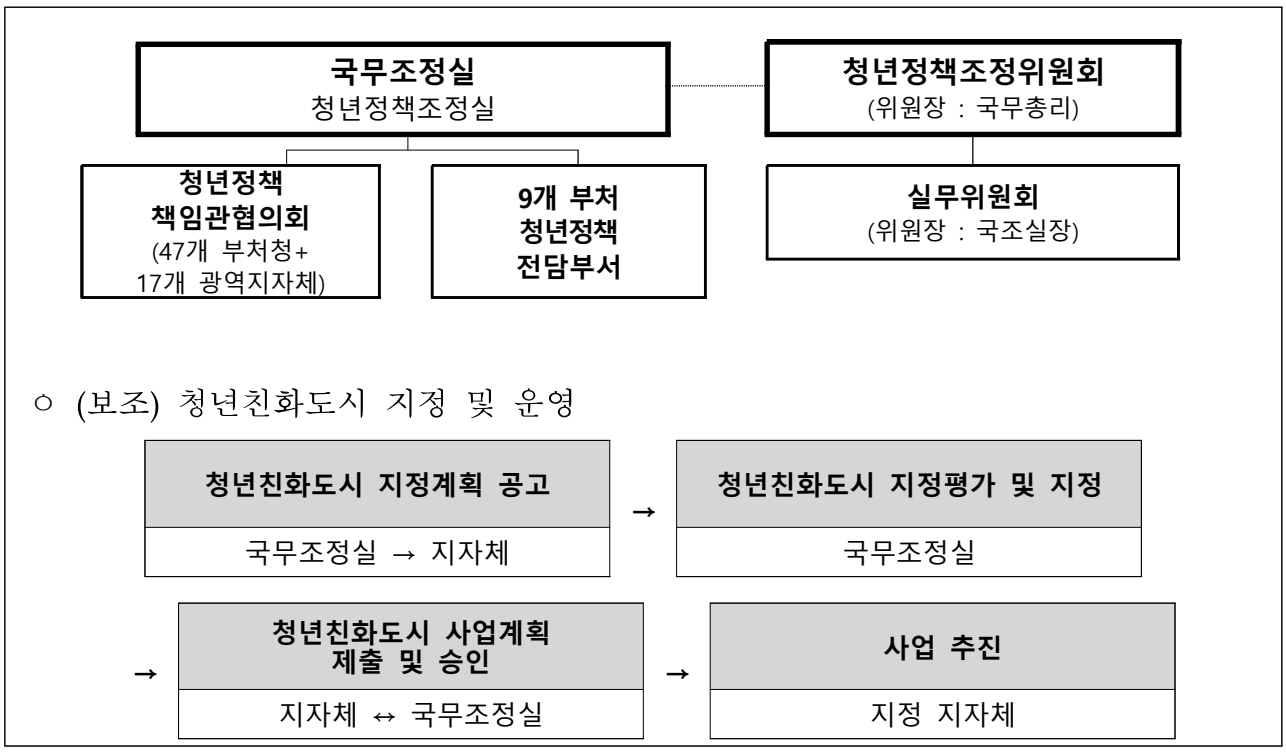

○ (보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 업 명
(2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7035-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9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본예산(B)		(B-A)/A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4,879	5,165	5,049	5,049	△116	△2.2

4. 사업목적·내용

○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소외계층·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2.3.25 제정·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 등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총괄·조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1.5월「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시행(’22.3.25)에 따라 법정 조직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

○ 추진경위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1.5.4)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마련(‘21.10),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1.11) 발표 및 UN 제출(’21.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 변경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출범(’22.10.26)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수립(’22.10.26)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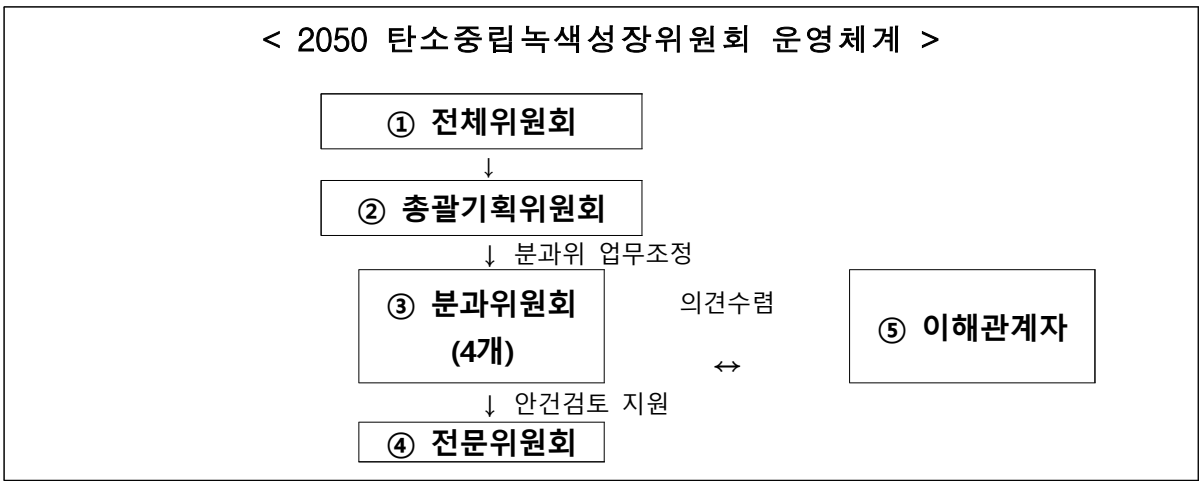

사 업 명
(29)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7035-3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391	481	442	442	△39	△8.1

4. 사업목적·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심의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 간 정책조정・협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 정책조정・협업 지원
-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 정책조정・협업 지원
-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강원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접경·폐광지역 개발, 환경 친화적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데이터 등), 해양산업 등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방향 발굴지원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추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및 특별법 개정 반영 시 필요한 관계기관 간 정책조정・협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10.12.27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정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11.01.28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② 추진경위

- '10.10월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
- '10.12.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11.01.28「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11.03.1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
- '12~'14년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

- ’13~’16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
- ‘15~’16년 상반기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 행안부(’19.1~2월)·과기정통부(’19.7~8월) 등 세종시 추가 이전 지원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 ‘22년~ :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부처 추가 이전 지원
- 국정과제(‘22.7) : ⑫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㊳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스마트시티 시범도시)
  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㊻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행정수도 세종 완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

②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
  (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5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부가세 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제출(제4단계 제도개선 2,152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0.11월 :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10.5～11월, 법제연구원), 헬스케어타운 용지보상(‘10.10)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10.11)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5월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11.5～12)
- ‘11.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1.12월 :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
- ‘12. 3월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 ‘12.10월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약 1조원)체결 및 착공
- ‘12.10월 :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정상 개교
- ‘13. 3월 :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2015→‘2021 / 6년 연장)
- ‘13. 9월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A·R·H지구 약 1조1천억원)체결
- ’13.1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2월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22~6.1일)
- ‘16.12월 :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8~6.6일)
- ‘17. 8월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7.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2.28)
- ‘18.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14.~5.26일)
- ‘18. 2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계획 수립
- ‘18. 7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7.5-6)

- ‘18.11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토론 워크숍
- ’19. 2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
- ’19.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4~6.12일)
- ‘19. 6월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착수(용지확보, ’20.12)
- ‘19.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 ’20.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수립(제주지원위 심의)
- ’20. 5월 :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착공(준공, ’21.12)
- ’20. 7~12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조정
- ’21.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월~5월)
- ’21. 3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21.11월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1.12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21→’31 / 10년 연장)
- ‘22.12월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22.12월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행안위 의결
- ’23.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시행($600→$800, 주류 1병→2병)
- ‘23. 3월 :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KMI 건강검진센터 개원
- ‘23. 6월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법사위 의결
- ‘23. 6월 :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 국정과제(‘22.7) : ㊴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㊶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22.06.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10조의2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23.01.17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3.06.0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시행일 : ‘24.06.0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② 추진경위

- ‘22.06.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6.11. 시행)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23.01.17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3.01.월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단 출범
- ’23.03.30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강원도청)
- ’23.03.30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국무조정실훈령 제186호)
- 국정과제(‘22.7)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23.01.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18. 시행)
  * 제11조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23.04.17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② 추진경위

- ‘23.01.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18. 시행)
  *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23.04.17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 ‘23.04월 :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출범 및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내 전북지원과 설치
- ‘23.07.13 :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전북도청)
- 국정과제(‘22.7)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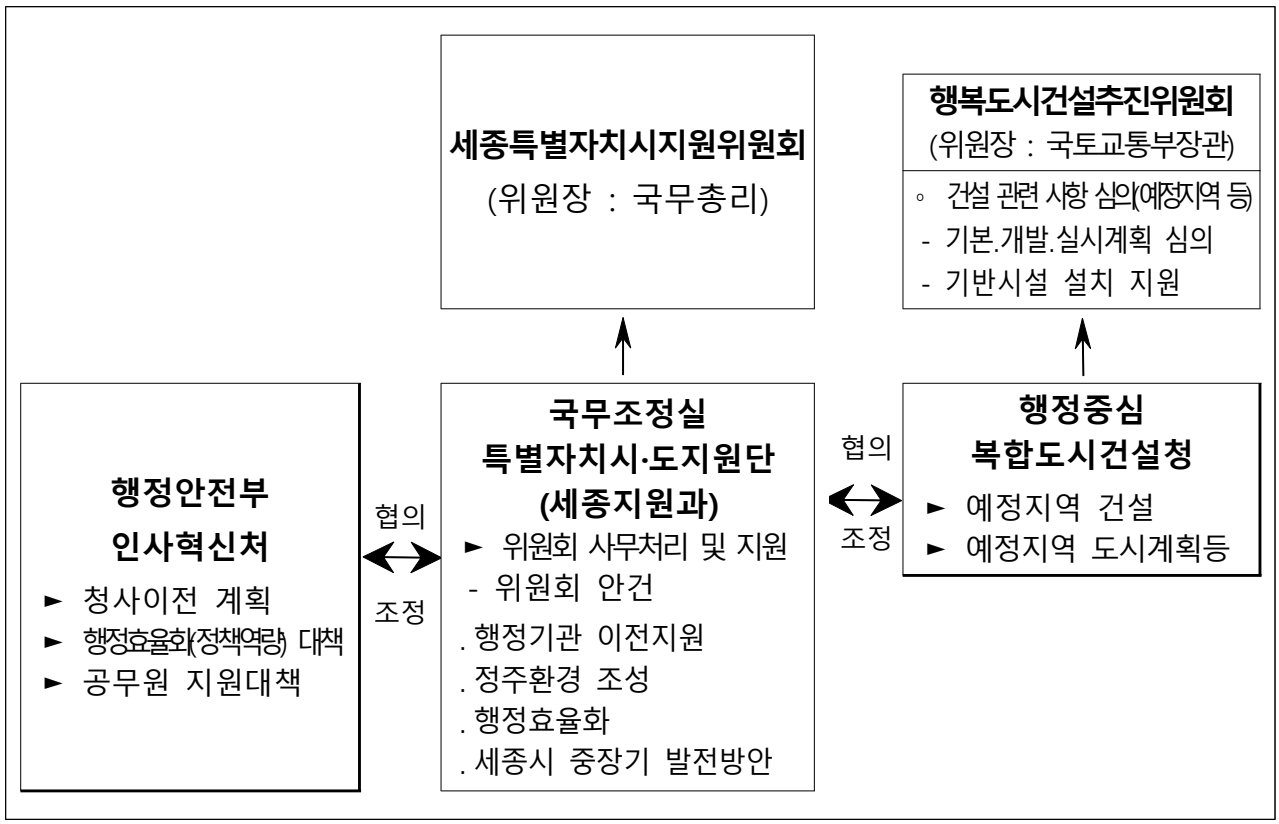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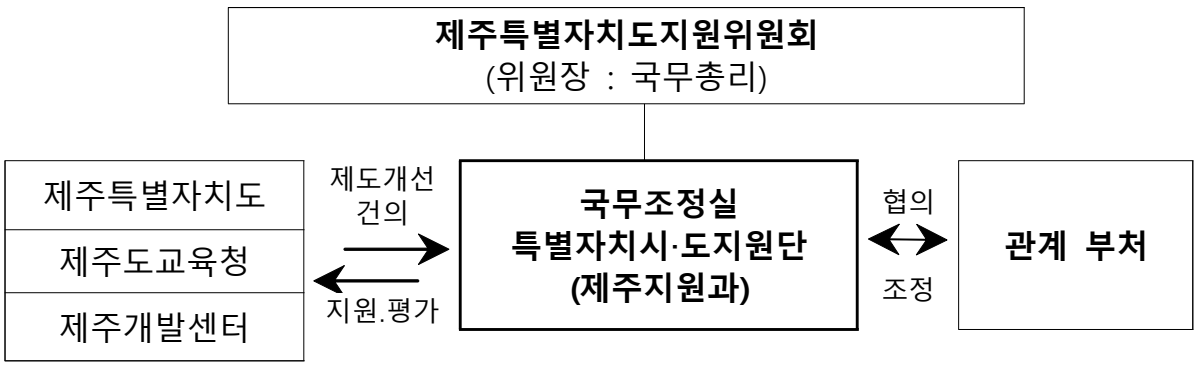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특별자치도 운영・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 심의・확정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위 업무 처리 및 주요과제 협의・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과제 필요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제주지원과)에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건의하고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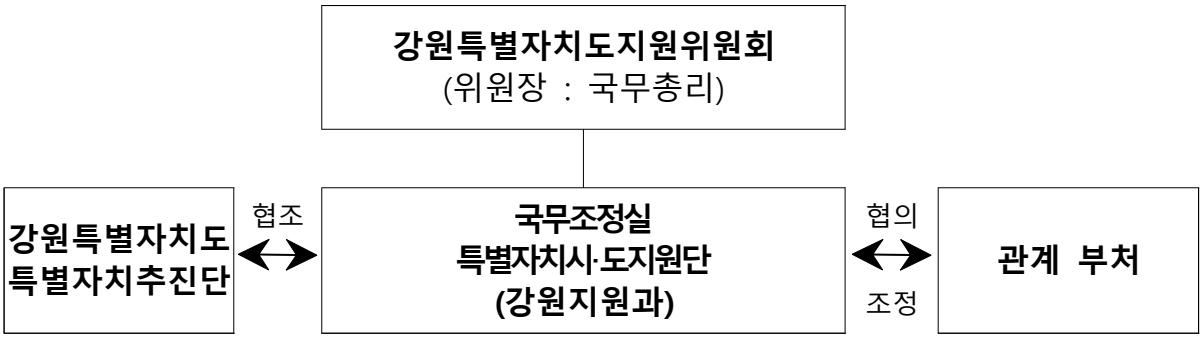

○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특별자치도 운영·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구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 심의·확정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위 업무 처리 및 주요과제 협의·조정

○ (강원특별자치도)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과제 필요성을 검토하여 특별자치시·도 지원단(강원지원과)에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건의하고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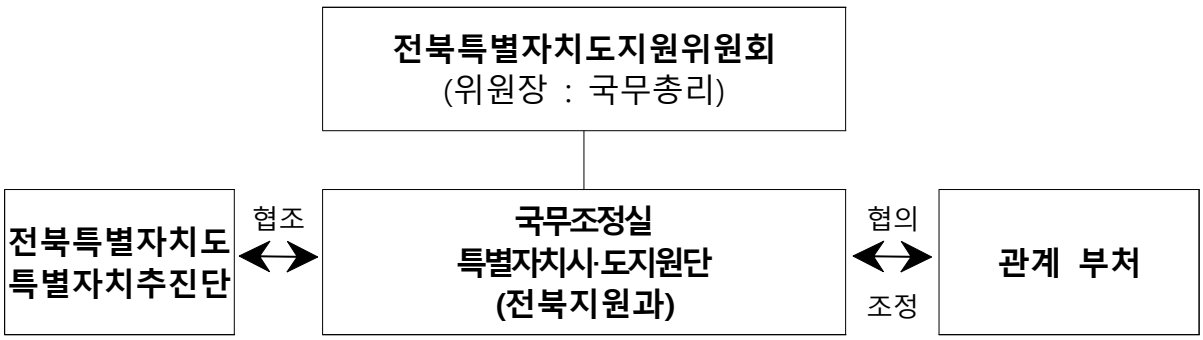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북자치도의 지방분권,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사항 심의·의결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특자도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지원, 전북지원위 운영, 전북특자도 성과평가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자도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치법령 개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사 업 명
(30)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경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금융정책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729	628	628	△101	△13.9

4. 사업목적·내용

○ 2015년 UN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육상·해양 생태계 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SDG) 채택

○ 중앙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4)·시행('22.7.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혁>

시기	법령	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
`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	환경부
`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10년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조실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자문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포털 운영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시점 도래(2030년)에 따라 정책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방안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5항(국가위원회 구성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4항(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추진경위

- UN의 위원회 설치 권고('92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 2000.9.20 지속가능정책 자문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
-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1기~4기 위원회 운영
  - 1기('00.9.20~'02.9.19) : 33명(강문규위원장, 민간 19, 정부 13)
    * 새만금사업 자문,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검토 도입
  - 2기('02.10.4~'03.6.25) : 34명(박영숙위원장, 민간 20, 정부 13)
    * 정책부문별 전략수립(국토.에너지 등 10개), 지방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 3기('03.12.15~'05.12.14) : 76명(고철환위원장, 민간 27, 시·도 48)
    * 국정과제위원회 편입,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탄강댐사업 조정
  - 4기('06.5.2~'08. 2.4) : 32명(김상희/윤서성위원장, 민간 19, 정부 12)
    * 기본법 제정, 장항산단 조성 및 연안권발전특별법 등 현안 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07.8.3 제정, '08.2.4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격상**
  · 5기('08.5.~'09.4) : 30명(김형국위원장, 민간 23, 정부 6)
    *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시범평가 결과 발표 및 시행령 제정
-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10.1)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로 개편하여 운영**
  · 6기('10.9.9~'12.9.8) : 24명(박준우위원장, 민간 18, 정부 6)
    * 제2차 기본계획('11~'15) 수립,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UN 제출
  · 7기('12.11.29~'14.11.28) : 34명(민경석위원장, 민간 26, 정부 7)
    *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8기('15.9.1~'17.8.31) : 32명(전영섭위원장, 민간 25, 정부 7)
    * 제3차 기본계획('16~'35) 수립,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9기('18.8.3~'20.8.2) : 33명(문태훈위원장, 민간 26, 정부 7)
    * 제3차 기본계획 변경계획(K-SDGs) 수립,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10기('20.12.4~'22.12.3) : 32명(윤순진/제종길위원장, 민간 25, 정부 7)
    * 제4차 기본계획 수립(`21~`40)
- '22년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국조실)」을 다시 제정('22.1),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구성('24.10.1)하고 국조실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24.11.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 연구, 포털 운영 등 용역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성과물 검사검수 ⇨ 정산 후 대가지급

< 회의 개최 등 >

- 수당지급, 회의장 임차, 회의자료 인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

사 업 명
(31)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7035-3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	183	83	33	△150	△81.9

4. 사업목적·내용

○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48호, 2023.8.16 개정)

○ 추진경위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01.12)
- 매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02~'23)
-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추진, 마약류 국내외 정보 공유·관리, 협력 등 기관간 협조사항 논의를 위해 그간 연 2~4회 개최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23.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4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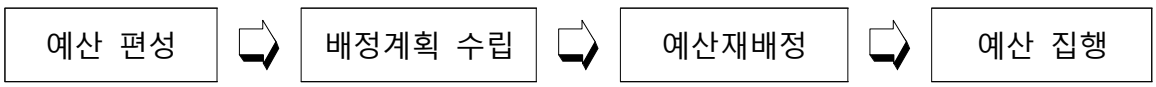

사 업 명
(32)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7035-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	3,473	3,446	1,958	△1,515	△43.6

4. 사업목적·내용

○ **(목적)**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맞춤형 정책 검색, AI챗봇 상담 등 청년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 제고

○ **(내용)** ①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②1차 구축 완료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기능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청년기본법」제24조의5

○ 추진경위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주요 과제로 반영 (’22.5.)
-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 관리 주체를 고용부에서 국조실로 이관 (’22.7.)
-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2.11.)
- 「청년기본법」제24조의5 신설 (’23.3.21.)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3-5-3 “청년정책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반영 (’23.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청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플랫폼 운영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858	100	청년기본법 제24조의5 제3항 및 제4항

7. 사업 집행절차

○ 플랫폼 운영 :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운영기관 지정 및 사업출연금 교부	국무조정실	· 「청년기본법」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을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전담 운영기관 지정 완료('24.6월)
⇩ (1,858백만원)		
② 사업 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플랫폼 운영(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③ 사업 결과보고	국무조정실	· 운영 결과 정기검수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 및 감리 : 국무조정실 직접 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무조정실	·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요청서류 작성
⇩		
② 용역 공고	조달청	· 사전규격 공개, 용역 공고, 협상순위 통보
⇩		
③ 계약 체결	국무조정실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④ 사업 수행	계약업체	· 착수보고·주간보고 등 · 사업수행
⇩		
⑤ 사업 결과보고	국무조정실	· 사업 산출물 보고

사 업 명
(33)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국무총리비서실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2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	192	167	167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세기본법」(법률 제19926호) 제55조(불복), 제69조(청구절차) 등

○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의 제도 등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신규(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7. 사업 집행절차

-(홍보) 예산배정 → 심판원 홍보 등 배너 제작 → 포털 및 언론사 홍보 → 예산집행

-(50주년 기념행사) 예산배정 → 용역발주 → 기념행사등 개최 → 예산집행

사 업 명
(34)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인사과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34	1,139	1,153	1,153	14	1.2

※ '24년부터 청년인턴 예산 추가

4. 사업목적·내용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직장교육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일체감 형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 제10조

○ 추진경위

- ’04.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도에는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 ’23년~ 정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 채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사업수혜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원

○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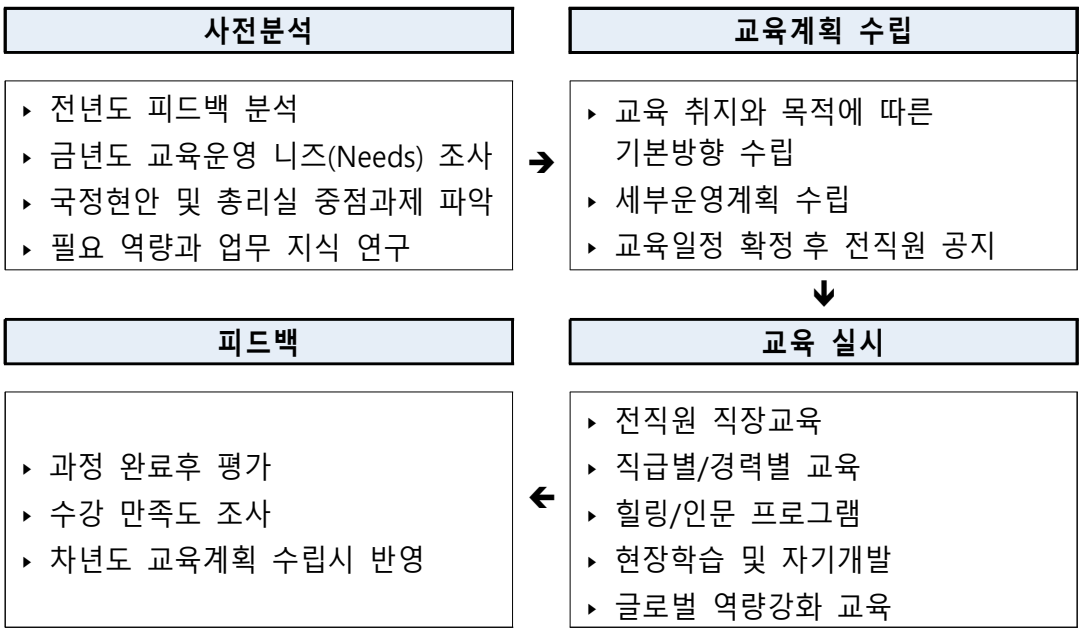

사 업 명
(35) 내부 정보화(정보화) (703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내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내부 정보화 (정보화)	1,667	1,655	2,472	2,472	817	49.4

4.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

○ (사무용 SW구입)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한글·MS오피스 등 사무용 SW 구입

○ (노후 장비 교체) 기존 내부 정보시스템 중 최상단 업무망 네트워크 백본, 국무총리 전용 영상회의 장비, 항온항습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된 서비스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9030호, ‘23. 5. 1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34518호, ’24. 5. 2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훈령 제316호, ‘13. 9. 2.)

○ 추진경위
- (舊)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06.8)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7.1)
-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08.2)
- 통합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9.2)
-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10.6)
-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10.12)
-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11.10)
-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12.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13.12)
-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14.12)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15.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고도화 사업(‘16.1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17.4)
- 내부정보시스템(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20.10)
- 영상회의실 전용 장비 이중화(’2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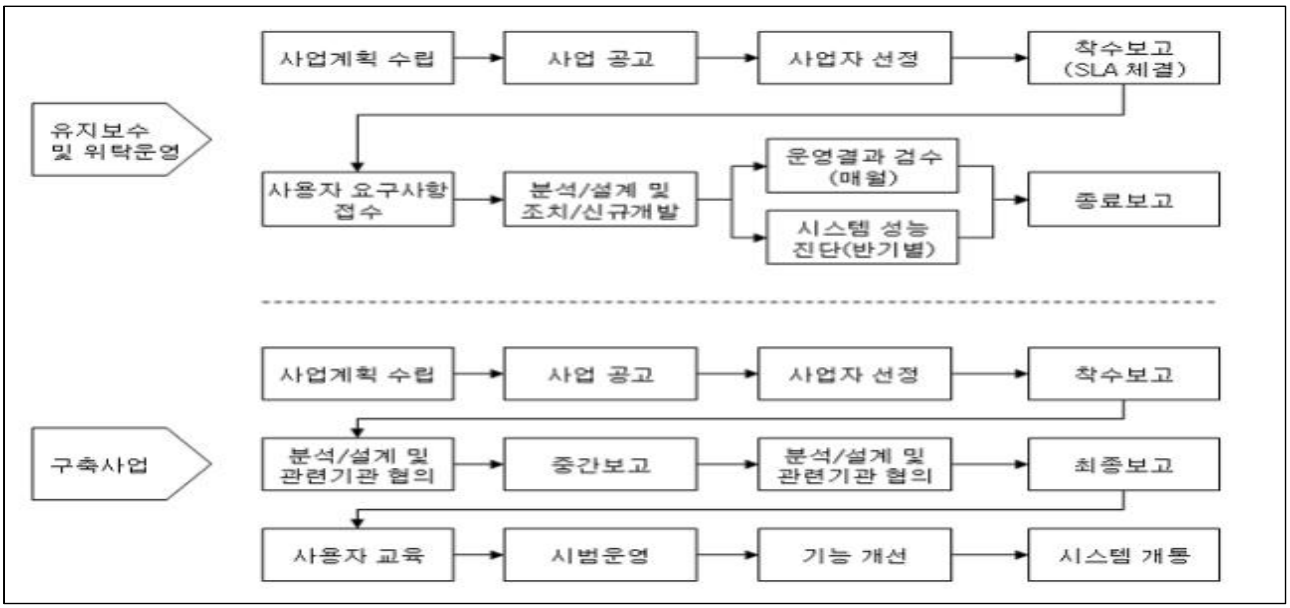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SLA 체결)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분석/설계 및
조치/신규개발
운영결과 검수
(매월)
시스템 성능
진단(반기별)
종료보고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중간보고
분석/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
최종보고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기능 개선
시스템 개통

사 업 명
(36) 공직복무 관리 (70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복무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직복무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본예산(B)	(B-A)	(B-A)/A
공직복무관리	842	868	974	954	86	9.9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대통령령 제35013호)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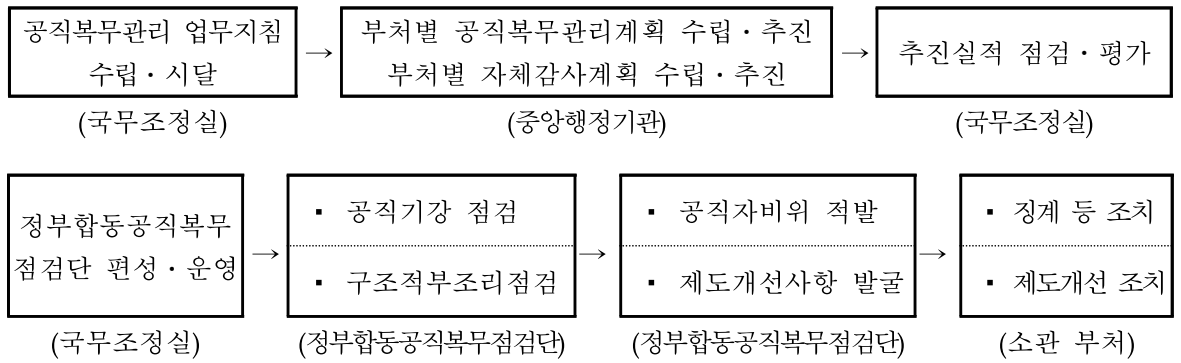

사 업 명
(37)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공관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1,126	400	400	△726	△64.5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 공관(세종, 서울)의 주요 건축물(주거동, 업무동, 삼청당 등)과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6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공고 ⇒ 계약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사 업 명
(38)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036-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94	1,499	1,499	1,400	△99	△6.6

4. 사업목적·내용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헌법 제86조 및 정부조직법 제18조

○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기념품·선물비,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

사 업 명
(39)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78	433	303	303	△130	△30

4. 사업목적·내용

○ 조세심판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통하여 내부 사용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심판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81조의14, 지능정보화기본법 14조

○ 추진경위

- ’01. 1월~’01. 8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 ’01. 1월~’01. 6월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08. 5월~’08.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11. 4월~’11. 10월 조세심판결정례 DB구축 및 검색강화 사업
- ’12. 2월~’12. 6월 내부업무관리시스템 WEB방식으로 전환 사업
- ’18. 8월~’18. 12월 조세심판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이관 사업
- ’19. 4월~’19. 6월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3. 2월~‘23. 6월 전자조세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 ’24. 2월~‘24. 7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조세심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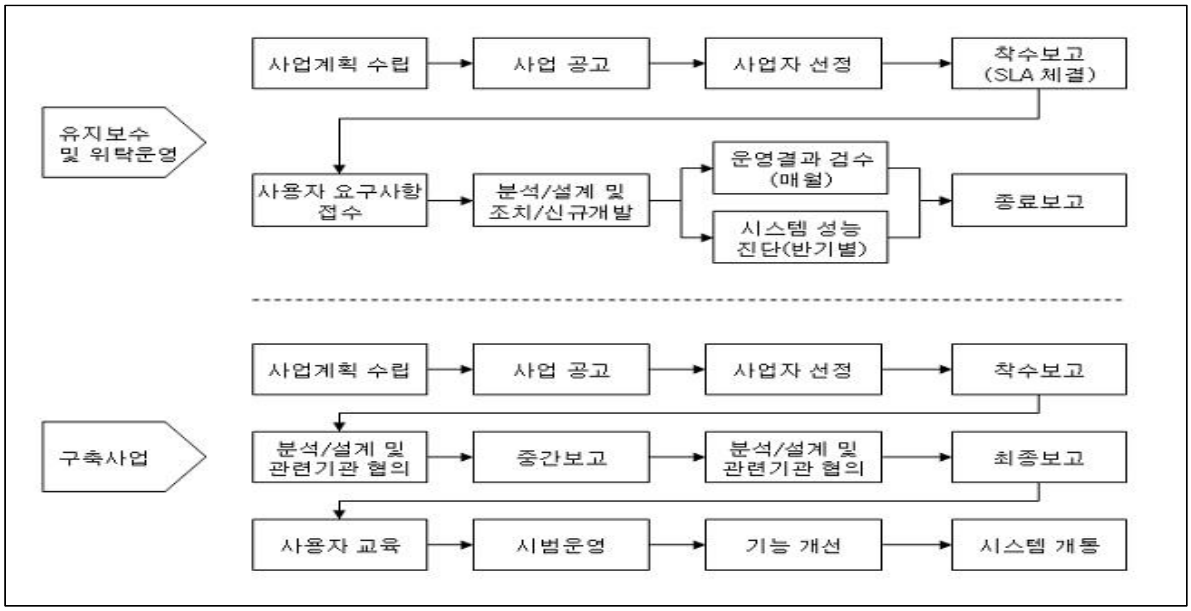

사 업 명
(4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36-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15	709	712	707	△2	△0.3

4.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의 부패사각지대* 시정·예방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 부처합동 점검체계(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를 통해,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

* 부패예방추진단의 정책추진 역량과 소관·유관 부처의 전문성·집행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다양한 시각으로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 실효성 있게 시정·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舊부패예방감시단, 舊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70호)

○ 추진경위

- ('14.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출범

- ('14.8)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명칭 변경 등을 위한 훈령 개정(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14.8)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17.8)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20.3))

- ('14.8~) 감시 소홀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부패·부조리 시정·예방 및 제도개선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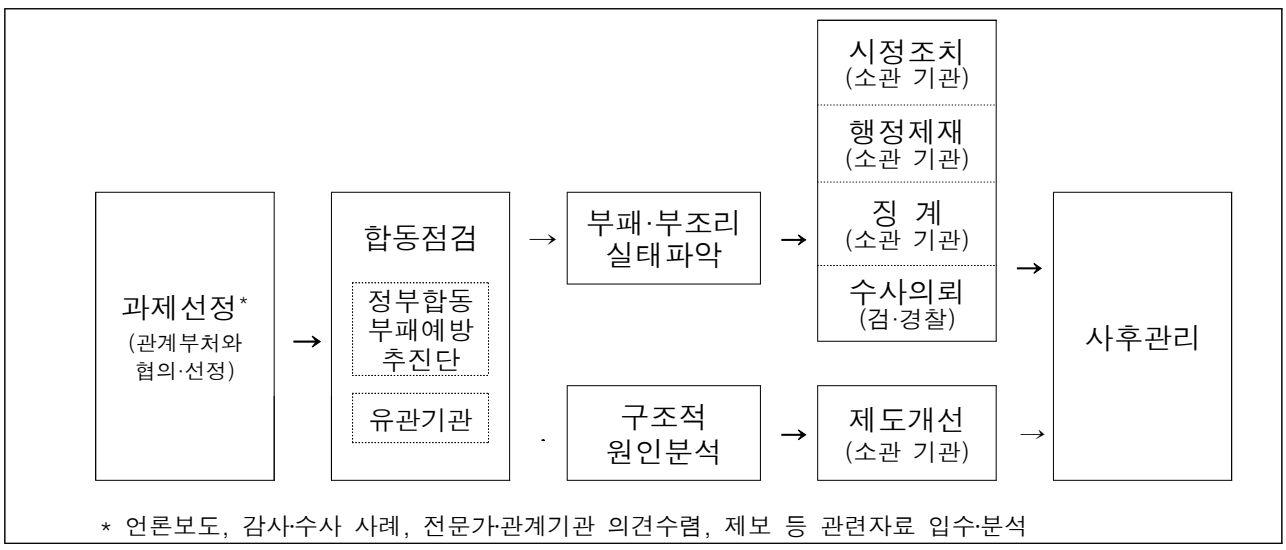

사 업 명
(4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7036-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운영	-	-	2,129	1,949	1,949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추진경위

* 1995년 광복 50주년 기점 매 10년 단위 범국가적 광복 기념사업 실시

- ’24.7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4.8월 국무조정실 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8월~’26.6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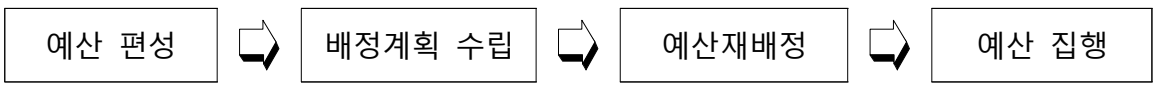

사 업 명
(42)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디지털소통비서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4	567	570	570	3	0.5

4. 사업목적·내용

○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제7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제9항)

○ 추진경위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정책 소통 확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전문임기제 3명*) 확충('18.8)

- 대통령·국무총리의 적극적 정책 소통 활동 지시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일라고, 때로는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22.7.22.,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대통령)

• "디지털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고,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22.5.23, 국무총리 취임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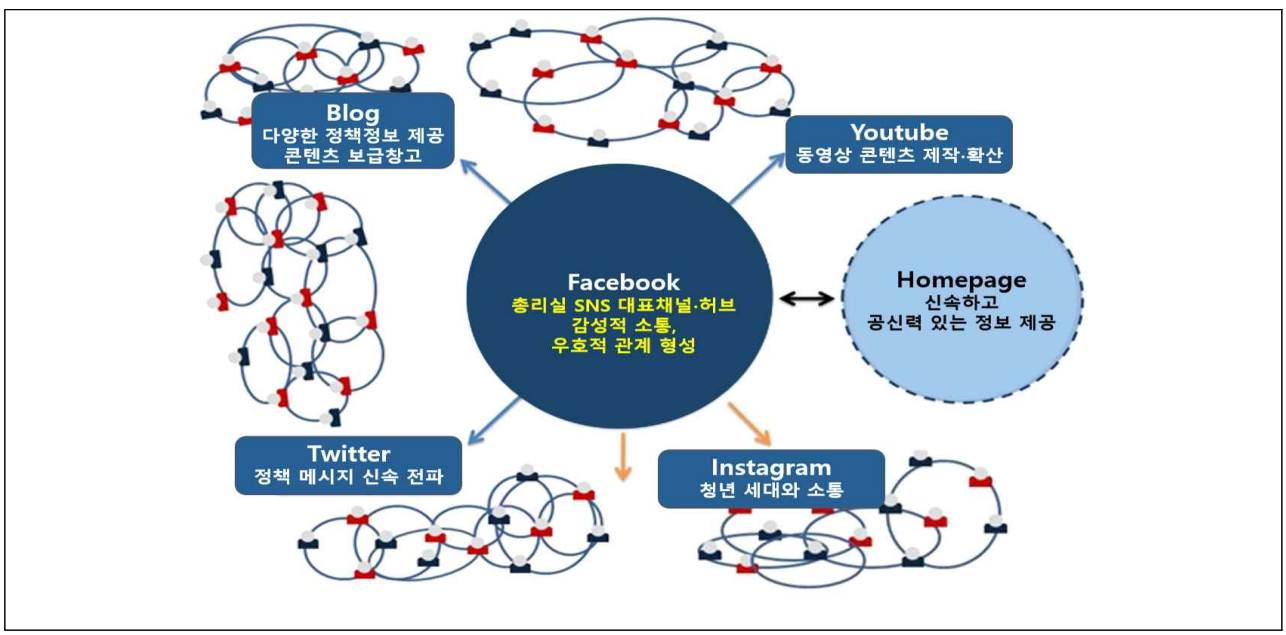

사 업 명
(43)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민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정부안	2025년 본예산(B)	증감 (B-A)	증감 (B-A)/A
국회·정당및 시민사회등과의 소통강화	1,198	984	934	852	△132	△13.4

4. 사업목적·내용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 정책연수 등 대국회 소통강화를 통해 국정현안 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와의 현장 직접소통 강화, 시민단체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정부-시민사회간 소통·협력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 주요 국정현안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업무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8810-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국제정책대학원 사학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본예산(B)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전출	296	154	217	217	63	40.9

4. 사업목적·내용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연금부담금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 × 3,706/9,000
퇴직수당부담금 : 퇴직수당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